

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및 수정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전문위원 손 자 용

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및 수정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규약안은 2011년 11월 2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, 수정안은 2011년 12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2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1)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

- 지방자치단체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

2)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수정안

- 충북혁신도시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여 조합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, 구체적인 사업비 부담기준을 명확히 하며, 결산검사 위원을 3인 이내로 하여 관리·감독의 내실을 기함.
-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조문내용 표현을 적합하고, 통일되게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1)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

□ 조합의 명칭(안 제2조)

□ 구성 및 사무소의 위치(안 제3조, 제4조)

- 충청북도, 진천군, 음성군을 구성원으로 충북혁신도시 내에 둠

□ 조합의 사무(안 제5조)

- 충북혁신도시 건설 종합계획 수립, 건설관련 협의·조정예 관한사무
- 청사 및 공공시설물 등 정주여건 조성·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무
- 대민 행정서비스를 위해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

□ 의결기구 - 조합회의(안 제6조 ~제11조)

- 조합원이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여 조합의 주요사항 심의·의결
- 의장은 충청북도 지사가 추천한 위원 중 선출하며, 부의장은 진천군수·음성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중 1인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함
- 정기회 1회 개최(매년 4/4분기 중), 재적위원 1/3 요구시 임시회 소집

□ 집행기관 - 사무기구(안 제12조, 제13조)

- 조합 및 조합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둠

- 조합장은 충청북도지사 임명, 사무직원은 자치단체 파견공무원과 조합에서 임용한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

□ 경비부담(제 14조)

- 조합의 경비는 정부의 지원금, 자치단체의 분담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
-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공동사업비는 조합원간 협의로 결정

2) 충북현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수정안

□ 조합회의 구성 및 자격조건 조문 변경(안 제6조)

-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의 임기 ⇒ 재직기간(안 제6조제4항)
- 지방의원 및 전문가 임기 ⇒ 2년,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(안 제6조제5항)

□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(안 제7조)

- 1년 ⇒ 2년(안 제7조제1항)

□ 조합 경비부담에 관한 조문 변경(안 제14조)

- 기타 필요한 사업 ⇒ 구체적인 사업비 부담기준(안 제14조제2항)

□ 결산검사위원 인원을 2인에서 3인으로 변경(안 제16조)

- 2인 ⇒ 3인(안 제16조제3항)

□ 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에 관한 조문 변경(안 제20조)

- 조합의 규약변경에 관한 항목을 추가

4. 검토의견

금번 규약안 및 수정안은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

규약안의 주요내용은

- 조합의 명칭, 구성 및 사무소위치, 조합의 사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- 의결기구인 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, 의장 및 부의장, 의결사항, 조합회의의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- 조합 및 조합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였으며,
- 조합의 경비를 정부의 지원금, 자치단체의 분담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등 경비부담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.

규약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

- 조합회의 위원의 임기를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, 지방의원 및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하도록 하였으며,

- 조합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,
- 결산검사위원을 2인에서 3인으로 변경하는 것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.

금번 규약안과 수정안은 충북혁신도시의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. 다만,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을 제출하고 곧바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안을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붙임 :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1부.

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수정안 1부. 끝.